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병두 의원 발의〕

의안번호	2711
------	------

발의일자 : 2025. 5. 29.

발 의 자 : 도병두 의원

찬 성 자 : 고성미 의원

엄셋별 의원

1. 제안이유

금천구 통·반과 통장현황 및 그 변동사항 등 관련 정보를 공고하도록 하여 행정 절차의 투명성 강화와 신뢰도 향상 및 구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통·반과 통장 업무에 대한 구민 참여와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반의 명칭 및 구역과 통장 현황 공고 규정 신설(안 제3조제2항)

나. 통장 임명결과 공고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2) 입법예고: 2025. 5. 30. ~ 2025.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통·반의 명칭 및 구역과 통장 현황은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통장 임명결과 공고) 구청장은 임명된 통장의 주요 인적사항을 임명일부터 1주일 이내에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생략) <u><신 설></u>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통·반의 명칭 및 구역과 통장 현황은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
<u><신 설></u>	<u>제3조의2(통장 임명결과 공고) 구청장은 임명된 통장의 주요 인적사항을 임명일부터 1주일 이내에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u>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 2024. 10. 02.]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531호, 2024. 10.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히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스스로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3., 2021.12.31.>

제2조(통·반의 조직) ① 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 <개정 2013.5.10.>

② 동에 두는 통의 수는 지역 여건과 거주 형태를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신설 2004.6.30., <개정 2010.11.23., 2020.3.25.>

③ 1통은 6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04.6.30., 2010.11.23.>

④ 반은 20가구 이상 40가구 이하로 하되 18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있어서는 30가구 이상 50가구 이하로 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04.6.30., 2010.11.23.>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구청장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삭제 <2024.10.2.>

제5조삭제 <2024.10.2.>

제6조삭제 <2024.10.2.>

제7조(임무) ①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4.6.30., 2010.11.23., 2017.1.4.>

1.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불편사항 등을 파악 보고
3.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정 발굴·연계 등 복지업무지원 활동
4.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신고사항의 사후 확인
5.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협조
6. 보안등, 빗물받이 등 각종 시설물 확인과 지역 청소업무 협조
7. 각종 사건·사고 보고와 풍·수해, 제설 등 지원
8. 재해 발생시 주민 대피와 피해상황 조사 협조
9. 지방세·과태료·부담금 등의 고지서 송달 협조
10. 해당 통·반 주민의 비상연락망 유지
11.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만 해당함)
12.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만 해당함)
13.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와 그 밖에 동 행정청에 필요한 사항

② 통장이나 반장의 일시 유고 시에는 통·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1.23.>

제7조의2(통장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구정 주요행정시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장으로서 업무수행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통장교육은 통장으로 임명 전의 기본교육과 재직 중의 심화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4.10.2.>

③ 신규통장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임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기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25.>, <개정 2024.10.2.>

④ 통장으로 재직 중에 실시하는 심화교육을 미이수한 사람은 통장연임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0.11.23.>, <개정 2020.3.25.>

제7조의3(비밀유지)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0.11.23.>, <개정 2013.5.10.>

제8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가구주나 주부로 구성한다. <개정 2010.11.23., 2020.3.25.>

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개정 2010.11.23.>

③ 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할 때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0.12.16., 2010.11.23.>

제9조(통·반장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11.23.>

제10조(편의제공) ①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23.>

②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3.5.10.>

제11조(실비수당등)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23., 2017.1.4.>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23.>

③ 통·반장에게는 구정홍보, 시찰,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제공하며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사업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04.6.30.>, <개정 2007.5.23., 2010.11.23.>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15.>

[제목개정 2022.10.15.]

부칙(제35호, 1995.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98호, 1995.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36호, 1999.09.22)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4호 내지 제6호의 수입기관란의 “동장“을 각각 “동장(단, 시흥1동장은 제외)“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금천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동장“을 “동장(단, 시흥1동은 제외)“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금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중 “한한다.“ 다음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시흥1동장은 제외한다.“

④ 서울특별시금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중 “동사무소“를 “동사무소(단, 시흥1동사무소는 제외)“로, “동장“을 “동장(단,시흥1동장은 제외, 이하 같다)“로 한다.

부칙(제293호, 2000.12.16)(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②까지 생략

③ 서울특별시금천구통·반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동장(단, 시흥1동장은 제외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중 “동장(단, 시흥1동장은 제외)“을 “동장“으로 한다.

④에서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제310호, 2001.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98호, 2004.06.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통장의 임기등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10월 1일 현재 재임중인 통장으로서 1943년 10월 1일 이전 출생자는 제5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직에 위촉된 날부터 2년이 된 날에 해촉한다.

부칙(제495호, 2007.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85호, 2009.0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26호, 2010.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37호, 201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97호, 201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89호, 202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23호, 2021.12.31.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시행한다.

부 칙(제1353호, 2023.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531호, 2024.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行政洞)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行政里)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